

선 거 공 고

건설공제조합 조합원 운영위원 선거(제127회 총회)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1. 선거목적 : 조합원 운영위원 선출(제127회 총회)
2. 투표일시 : 2024년 2월 23일(금) 14시
3. 투표장소 : 건설회관 2층 대회의실 (서울시 강남구 언주로 711)
4. 선출위원의 수 : 정관 제30조 제1항 제1호의 조합원 운영위원 13명('아래' 참조)

<아 래>

선 거	선 거 구	선출인원	투표 방법
제1선거 (대규모출자자)	서 울	1명	총의결좌수
	그 외 지역	1명	"
제2선거 (대규모출자자 외)	서 울	1명	"
	경 기	1명	"
	충남·충북·대전	2명	"
	전남·전북·광주	2명	"
	경남·부산·울산	2명	"
	경북·강원·대구	2명	"
	인천·제주	1명	"
계		13명	

* 대규모출자자 : 선거공고일 기준 출자좌수 누적 기준 상위 20% 이내

* 각 선거구는 조합원 소속 영업점 소재지 기준

5. 입후보자 자격요건 : 선거공고일 기준 다음 각 요건을 모두 충족한 자
 - 조합원 운영위원 선거관리규정 제20조에 따라 선거인의 추천*을 받은 자
 - * 추천인 본인을 제외한 후보자 1인 추천 가능
 - * 이중추천의 경우 그 자가 행한 모든 후보자에 대한 추천을 무효로 함
 - 건설산업기본법 제55조의2의 제한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
 - 정관 제14조 제2항에 따라 피선거권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자
 - 정관 제34조의 운영위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

<운영위원 결격사유(정관 제34조)>

- (1)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
- (2)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
- (3) 금고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
- (4)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
- (5) 법·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기타의 법령에 위반하여 건설업의 영업정지나 부정당업자로 처분을 받고 그 기간이 만료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
- (6) 법에 규정된 건설공사실적·기술자보유현황 또는 재무상태를 허위로 제출하여 100만원 이상의 벌금이 확정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
- (7) 어음교환소의 거래정지처분을 받고 그 처분이 해제되지 아니한 자
- (8)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에 의한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한 후 그 사유가 종료되지 아니한 자

6. 등록 기간 : 2024. 2. 8.(목) 09:00 ~ 2024. 2. 15.(목) 18:00

7. 등록서류 및 등록장소

- 등록서류[*서식은 건설공제조합 홈페이지 “운영위원선거” 참조]

- ① 후보자 등록신청서(별지서식 제4호)
 - ② 개인(신용)정보 수집이용조화제공 동의서[조합원운영위원후보자용](별지서식 제5호)
 - ③ 후보자이력서(별지서식 제6호)
 - ④ 추천장(별지서식 제3호)
- * 선거공고일 기준 총 출자좌수 또는 대의원 총수의 3% 이상 추천을 요함
- ⑤ 운영위원 결격사유 부존재 확인서(별지서식 제7호)
 - ⑥ 주민등록초본 1부
 - ⑦ 법인인감증명서(개인사업자는 개인인감증명서) 1부

※ 본인확인용 신분증(주민등록증, 자동차운전면허증 또는 여권) 지참 필요

※ 후보자 개인 제작 홍보물 등 상기 제출서류 외의 자료에 대해서는 접수를 거절함

- 등록장소 : 선거관리위원회(건설회관 19층 기획조정팀) 또는 소속 영업점

* 서류제출은 방문접수에 한하며, 우편제출 또는 이메일 제출은 불가함.

(단,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인감증명서를 첨부한 위임장 등 대리 권한을 증명하는 서류 및 대리인 신분증 사본 1부 제출 필요)

8. 후보자 기호 결정 방법

- 각 선거(선거구)별 후보자 접수순에 의함

9. 후보자 등록 무효 및 취소

- (무효) 선거관리규정 제6조에 의하여 피선거권이 제한되는 경우 또는 후보자 등록 서류 등의 위·변조 사실이 확인된 경우

- (취소) 등록신청서 등 등록서류를 허위로 제출하거나 기재사항 중 중대한 흠결이 발견되어 후보자 등록기간 내 보완을 요청하였는데도 이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선관위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그 후보자 등록을 취소할 수 있음

10. 출자좌수 위임방법 및 위임장 제출 기준

- 위임방법 : 총회 참석하는 소속영업점 또는 제2선거의 동일 선거구에 소재하는 다른 영업점 대의원에게 위임 가능(이중위임 불가)
- 위임장 제출 방법 : 전자위임 원칙(해외출장 등 부득이한 경우 서면위임)
* 서면위임은 인감증명서를 첨부한 원본을 제출하는 경우에 한함
- 위임장 제출기한(마감) : 2024. 2. 22.(목) 오후 6시까지

11. 후보자 공고

- 공고일자 : 2024년 2월 19일(월) (예정)
- 공고방법 : 조합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및 대한경제신문 게재

12. 선거운동 및 선거 관련 금지행위 등

- 선거운동기간 : 후보자 등록 접수 이후 ~ 2024. 2. 22.(목)
* 선거 관련 특정 행위의 금지 등은 선거관리규정을 참조하기 바랍니다.

13. 투표방법

- 선거 당일 현장에서 전자투표, 직접·무기명 및 단기명투표
- 제1선거 선거구별로 투표 후 제2선거 선거구별로 투표
- 선거인은 자기출자좌수 및 위임받은 출자좌수 1좌마다 하나의 투표권을 가짐
* 동일 선거구 내에서 여러 후보자에 대하여 나누어 행사 불가

14. 당선자 결정

- 후보자가 선출정수 이내인 경우 : 무투표당선
- 후보자가 선출정수를 초과하는 경우 : 최다득표자

15. 기타사항

- 기타 열거하지 않은 사항은 건설공제조합 홈페이지에 공지된 정관, 선거관리 규정 및 선거관리지침에 따르며, 상기 선거공고 사항에 대한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내용을 변경 공고합니다.

2024년 2월 8일

건설공제조합 선거관리위원회